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38000-67042-96-66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1999. 5.

환 경 부

# - 목 차 -

- I. 평가 개요-----
  - 1. 평가 목적-----
  - 2. 평가 기본방향-----
  - 3. 추진 경과-----
  
- II. 의제21과 의제21 국가실천계획-----
  - 1. 「의제21」 개요-----
  - 2. 「의제21」 국가실천계획-----
  
- III.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 1. 사회·경제 부문-----
  - 2. 자원의 보존 및 관리부문-----
  - 3.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
  - 4. 이행수단 부문-----
  
- IV. 추진실적 종합평가 및 향후조치 계획-----
  - 1. 종합평가 의견-----
  - 2. 향후조치 계획-----

붙 임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97.7 - '98)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

---

## I. 평가 개요

### 1. 평가 목적

- 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의 권고 및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96년에 수립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 실효성 확보
- 나. 실천계획의 부문별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련기관·단체에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 미흡분야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
- 다. 각장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는 부문별·각장별 정책에 대한 관련기관의 이해 제고 및 국제환경회의 등에서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

### 2. 평가 기본방향

- 가.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각 장별 주관부처별로 실시한 자체 평가결과를 취합분석
- 나. 각부문별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보다는 각장별 주요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내용을 파악하는데 평가의 중점을 둠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제21」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3. 추진 경과

- 가. '96.10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유엔 제출
- 나. '98. 2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92-'97년간 추진실적 평가
- 다. '98. 6월 98년도 추진실적('97.7-'98.6) 평가계획 수립
- 라. '98.10월 각장에 대한 추진실적 주관부처별 자체평가
- 마. '99. 2월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 취합
- 바. '99. 3월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안) 작성 및 관계부처 검토의뢰
- 사. '99. 5월 평가보고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취합

## II. 「의제21」 과 「의제21 국가실천계획」

### 1. 「의제21」 개요

- 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의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채택
- 나. 「의제21」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각국 및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분야별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제적 기초규범

※전문 및 4개부문(사회경제, 자원보전관리,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이행수단 부문)의 40개장으로 구성

다. 유엔은 「의제21」 이행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COSOC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

(1) 각국 및 국제사회의 「의제21」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속개발위원회 설치를 리우회의에서 결정

(2) 지속개발위원회 회의는 93년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

(3) 우리나라는 '93-'95년간 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을 역임한바 있으며, '99.5.1일부터 3년간 이사국 업무를 재역임

라. '97년에는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국제사회 및 각국정부의 「의제21」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까지의 작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회의에서 「의제21」을 보완하는 「의제21 향후이행계획서」를 채택

## 2. 의제21 국가실천계획

### 가. 수립·추진경과

(1) 「의제21」 제37장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구현을 위한 각국의 프로그램전략을 담은 실천계획을 조속히 작성토록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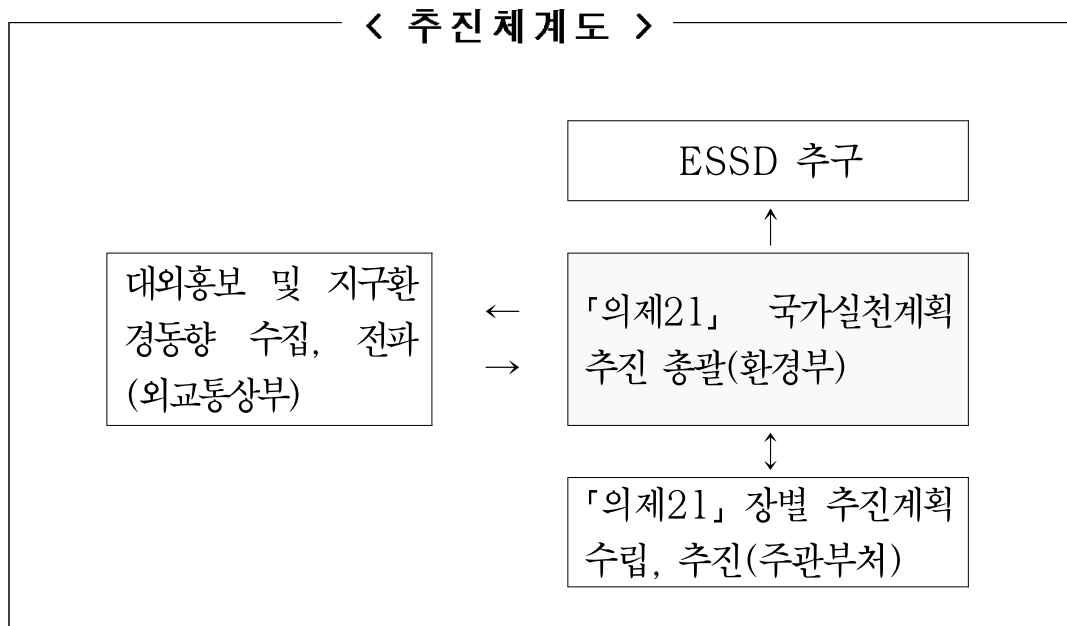
(2) '94년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국가실천계획 수립 결정 및 환경부를 「의제21」 추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장별 소관부처 지정

(3)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된 국가실천계획(안)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친후, '96.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영문작업 후 '96.10월 유엔 제출

나. 추진 체계

- (1) 각장별 추진계획을 주관부처별로 수립, 추진
- (2) 「의제21」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장별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필요시 계획 추진방향 재정립
- (3)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외협상 대책 마련(외교통상부, 환경부)
- (4) 「의제21」 추진실적 대외홍보 및 관련동향 수집(외교통상부, 환경부)



### Ⅲ.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각장별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97.7월 ~ '98.6월간의 추진 실적중 주요사항을 정리한 것임

#### 1. 사회경제부문(제2~8장)

##### 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 (1) 건교부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환경부의 '생태도시조성 기본계획'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 추진
- (2) 환경비전 21('96~2005),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1)을 통해 수질대기폐기물 부문의 중장기 관리대책 수립 추진

##### 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1)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및 보급, 환경영향 재평가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특수법인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운영('97. 7)
- (2)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지역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에 관한 지침' 제정('97.12)

#### 2. 자원의 보존 및 관리부문(제9~22장)

##### 가. 토지자원의 관리 및 계획에 관한 통합적 접근

- (1) 지적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공시지가 전산자료등 토지관련 자료를 통합한 토지종합시스템 구축('95. 2)

- (2)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 전 국토면적의 60.1%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 관리

#### 나. 산림황폐방지

- (1) 전국 산림 650만ha를 3대 이용목적별로(생산임지 355만ha, 공익임지 143만ha, 준보전임지 147만ha)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기반 조성
- (2) 조수보호를 위한 수렵면허시험제 도입('98. 2), 산림식물자원 보호를 위한 자생식물 및 천연보호림 관리요령 제정('98. 6)

#### 다. 사막화 및 한발퇴치

- (1) 환경오염 피해임지 회복사업 실시('98. 4 전남 여수), 산성우 모니터링 사업 지속 실시(전국 65개 고정조사구)
- (2) GIS기법을 이용한 북한산림실태 파악 및 황폐현황 조사(임업연구원)

#### 라.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

- (1)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서해안, 한강하구 및 임진강 하류지역) 산림생태계조사 실시('98. 5)
- (2)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97년말까지 9개소 실시)

#### 마.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 (1)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추진, 유기농등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기본방침 결정('98. 5)

- (2)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추진('98.2 농산물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개정)

#### 바.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 (1) 생명공학안전성 평가센터등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안전적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및 관련제도 정비 추진
- (2)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취급·이전·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사.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 (1)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연안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연안역 관리법 제정 추진('98.11월 현재 연안관리법안 국회상정)
- (2) 적조방지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해양오염사고 예방·방제기능 강화 등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96-2000)의 7대 주요 정책과제 추진

#### 아.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유독물 표시방법을 유해성 등에 따라 기존 2종의 표시방법을 10종으로 세분화
- (2)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중

#### 자.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과 환경안전관리

- (1)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군산 및 광양 2개소에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및 창원과 온산 처리장 증설공사 추진

- (2) 바젤협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  
리에관한법률' 개정('97.8.28), 동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개정고시('98.7.15)

#### 차.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 (1) 방사성폐기물 관리 소관부처를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하는 등 관리사업 추진체계 조성('97.1) 및 관계법령 개정
- (2)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와 사용후 연료관리등에 대한 방  
사성폐기물 관리대책 확정('98.9,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

### 3.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제24~32장)

#### 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 (1)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활동과 환경생활화의 기회보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1세기 청소년상 정립('97.11), 청소년육성 5개  
년계획의 수립시행(1998~2002), 청소년헌장 개정선포  
( '98.10)
- (2)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환경관련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환경보전 정보교환 통로 개설, 청소년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 나.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

- (1)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원주민 생활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대개도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교육 강화

#### 다.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 (1) 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위해 20개의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94년부터 운영
- (2) 매월 250개 단체에 대하여 환경정보지, 간행물 등 정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민간단체의 정책대안 제시능력 제고

#### 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 (1) 산업안전 및 환경에 관한 ILO 협약등 국제기준준수를 위해 '97.10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2) 노사 자율에 의한 사업장 재해예방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예규 제개정

#### 마. 산업계

- (1)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지원,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 (2) 산업계의 환경경영 확산촉진을 위해 품질환경인증협회의 환경경영(ISO 14000) 인증과 인증업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 바. 과학기술계

- (1) 과학기술장관회의(과학기술혁신특별법 제4조)등 국가과학기술정책 심의결정기구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추진
- (2)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기본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평가기간중 20차례 개최)

#### 사. 농민의 역할 강화

- (1)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한 '98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발간, 보급 ('97.11)
- (2) 농촌환경보호의 날 지정·운영 (매월 첫째주 토요일)

#### 4. 이행수단 부문( 제33~40장)

##### 가. 기술능력 이전협력과 능력 배양

- (1) 범정부적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5년 단위의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안(Green Contribution) 마련('97.11)
- (2)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대기, 수질, 폐기물, 청정기술 등 23개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3,965억원 투자 계획

##### 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 (1) 과학기술정보 D/B구축,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추진 및 전국의 통신망을 고속화대용량화 하는등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 (2)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 고급과학 두뇌 활용제도(Brain Pool) 운영

#### 다. 교육홍보 및 훈련

- (1)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통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적 환경운동 지속 추진
- (2) 언론, 기업, 시민운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조직적 홍보실시

#### 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 (1) UNCSD, WTO/CTE 회의 및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등 국제회의 참가

#### 마. 국제법적 장치 및 제도

- (1)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제출('98.3), 국내외 대응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9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정비

### IV. 추진실적 종합평가 및 향후조치계획

#### 1. 종합평가 의견

- 가.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있고, 정책발전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작업에 한계
- 나. 많은 부처가 동 실천계획의 이행 및 평가작업에 수동적이었으며, 동계획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능동적인 계획추진 및 자체평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그룹에 의한 평가가 필요

- 다. 각장별 추진 미흡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미흡
- 라.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
- 마. 그러나, 각 부처별 추진업무를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큰 의의라 할 수 있음

## 2. 향후 조치계획

- 가. 평가결과의 구체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장별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
  - (1) 2000년 이후부터는, 추진실적 평가시 각장별 세부추진계획과 대비하여 평가작업 실시
  - (2) '99년말까지의 추진실적 평가 작업시, 관계부처의 2000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의제21 국가실천계획 2000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 나. 각장별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 다. 평가작업에 전문성 확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의제21국가실천계획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 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가칭 “국가지속개발위원회” 설치방안의 장기적 검토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 '97.7 - '98)

여성특별위원회,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 목 차 -

## 제1부 사회경제 부문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1
제3장	빈곤퇴치	2
제4장	소비형태의 전환	4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5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7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9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13

## 제2부 자원의 보존 및 관리부문

제9장	대기보전	16
제10장	토지자원의 관리 및 계획에 관한 통합적 접근	17
제11장	산림황폐방지	21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24
제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26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28
제15장	생물다양성보전	32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33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36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40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43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방지와 환경안전관리	46
제21장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49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50

###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부문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	52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	56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	60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	61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63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	64
제30장	산업계 .....	67
제31장	과학기술계 .....	69
제32장	농민의 역할 강화 .....	71

### 제4부 이행수단 부문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	74
제34장	기술능력 이전·협력과 능력배양 .....	75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	79
제36장	교육·홍보 및 훈련 .....	82
제37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력 .....	85
제38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	87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제도 .....	88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89

※붙임: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각장별 주관기관 현황

#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 [ 재정경제부 ]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2. 추진실적

가. 97년 우리나라 ODA 지원실적은 다자간 협력의 증가에 힘입어 총 185백만불로 96년보다 16.6% 증가

- (1) ODA/GNP 비율은 96년 0.033%에서 0.042%로 다소 증가
- (2) EDCF 지원실적은 급격한 환율인상(96년 804.74→97년 951.11)으로 달러 환산금액은 다소 감소세
- (3) 다자간 협력은 DA, ADB, IBRD 등 출자증가에 따라 큰폭의 증가세 실현(517% 증가)

<ODA 지원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94	'95	'96	'97	전년대비증가율
ODA	140.2	115.9	159.15	185.61	16.6
ODA/GNP	0.037	0.025	0.033	0.042	-

나. 우리나라 ODA실적은 유엔 권고기준인 GNP 대비 0.7% 및 DAC 회원국 96년 평균수준인 0.25%보다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공적개발원조 지원에 한계

- (1) 원인 : 국방비부담, SOC·농어촌 등 과도한 재정수요 및 사회적으로 추진중인 4대 구조조정 등 재정부담이 높음
- (2) 대책 : 98년에는 경제가 IMF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경상수지 흑자(98년 399억불)를 실현하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이어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으로 전이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증대에 상응하여 ODA를 전진적으로 확충

### 4. 평 가

가.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경제협력 노력으로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개도국 재정지원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제3장 빈곤퇴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경제성장,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 빈곤감소를 중점 추진

### 2. 추진실적

#### 가. 저소득층 보호수준의 향상

- (1) '98년에는 거택보호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및 자녀학비로 1인당 월 162천 원,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125천원을 지원

< 표 : 최저생계비 및 1인당 정부지원 수준 >

구 분	'93	'94	'95	'96	'97	'98
최저생계비	129	136	188	200	209	220
1인당 지원액	56	65	78	107	133	162
가처분소득	80	90	133	165	191	220
최저생계비(%)	62.0	66.1	70.7	82.5	91.4	100.0

나. 생계보호 지원액을 1인당 월49천원('92)에서 162천원('98)으로 향상하고, 특히 '95년에는 피복비, '96년에는 월동대책비, '97년에는 생활용품비, '99년 자활 보호자에 대한 장제비를 신규지원하여 최저생계 보호수준을 향상

- (1)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급, TV 수신료 면제, 전화 및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각종 급여와 부담감면 시행하고
- (2)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

다. 종래의 획일적인 생계보호비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96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97년에는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급여방식 도입

- 생계보호비 차등급여 방식 개선

'96년	'97년	'98년
5등급 소득5등급	30등급 소득5, 가구원6인	36등급 소득6, 가구원6인

라. '97. 8월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활후견 기관의 지정,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등 생활보호제도의 보완과 함께 도시빈민층 밀집지역의 빈곤퇴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미흡분야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기준) 및 합리적인 자산조사 제도 미흡
- 나. 보완 대책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및 통합의료보험 전산망 활용방안 등 합리적인 소득재산 파악방안 강구

### 4. 평 가

- 전반적으로 국가실천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 제4장 소비행태의 전환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및 조기 실용화
- 나. 댐건설,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와 더불어 낭비적인 수요감축 중점추진
- 다. 폐기물 발생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

### 2. 추진 실적

#### 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1) 국내개발 신기술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실시, 우수 신기술의 국내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신기술평가센터 설치·운영 추진
- (2)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추진(50% → 70% 수준)

#### 나. 범국민적 용수절약 시책추진

- (1) 수돗물 10%줄이기 범국민운동을 통하여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 단축유도
- (2) 절수형수도기기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확대추진(100㎡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모든 신축건축물)
- (3) 일정규모이상 신축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유도 및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확대 추진
- (4)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물절약 실천유도

다. 자원절약형 소비 생활문화 정착

- (1) 자치단체의 쓰레기 분리수거 기능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대형사무실, 공원 등)에 분리 수거함 설치 추진
- (2) 중고 가전제품의 재활용센타를 현재 103개에서 150개로 확대하여 “고쳐서 다시 쓰기 운동” 전개
- (3) 재활용 제품의 의무구매기관을 현재 114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확대추진
- (4) 권역별로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재활용제품 판매지원 센터 운영 추진
- (5) “음식 낭비 않기” 범국민 운동 추진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문제점

- (1) 21세기에는 물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생활구조 변화로 인해 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연안 및 도서지역의 급수난이 심화될 전망
- (2) 상수원수의 70%를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어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취약하고, 단기간의 가뭄에도 오염이 크게 심화되고 식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3)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4)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매립(생활쓰레기 매립처리비율 68%)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넘비현상으로 인해 폐기물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어려움

#### 나. 대책

- (1) 2002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II급수(BOD 3ppm이하)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 신규오염원 증가를 억제하고, 발생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확대 추진
- (2) 물질약형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신축건물에 절수형 수도기기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대형건축물에는 쓰고 버리는 물을 다시 처리하여 이용하는 중수도 보급 확대
- (3) 수입의존도가 높은폐지, 고철등 폐자원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모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알뜰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4)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사료화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 4. 평 가

가. 국민 소비생활패턴 변화는 어느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모든 관계부처 및 관련 민간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나. 최근 환경문제와 함께 자원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 정착 및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달성노력 추진 필요

##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연구활동 강화

### 2. 추진실적

- 가.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추진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이 1%미만으로 저하되었고, 이러한 저출산의 지속으로 2028년 이후에는 인구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나.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자질 향상 및 국민보건복지 증진차원으로 전환하는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발표(1996. 6월)
- 다.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의 지속추진으로 1990년(10,613천명) 대비 1995년(10,231천명) 서울인구가 감소
- 라. 인구규모 및 변동과 이로인한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지역단위 연구소의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계획의 수립추진등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분야 및 원인

- (1) 대도시의 인구분산정책이 생활의 편의성, 문화생활의 집중 등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등으로 자체연구 및 재정투자 활성화가 미흡하고, 각종 계획수립에 기본이 되는 지역통계자료 생산 부족

#### 나. 대책

- (1)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도시의 육성 및 지원강화와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지속 추진
- (2) 지방정부의 인구와 환경에 관한 연구확대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통계자료 생산노력 강화

#### 4. 평 가

- 가.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대체출산수준 이하의 출산력을 실현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구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나,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등을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
- 나. 이러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노력의 지속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대학정원의 증원억제,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수원 지역의 주택건설의 억제, 대규모 건설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국민보건,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한 체제구축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2. 추진실적

### 가.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추진

- (1) '94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건의료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 추진

< 표 : 시설 및 장비지원실적 >

(단위 : 개소)

구분 기간	예산	계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시설	장비
'94~'98	1,802억원	257	120	123	102	104	18	30	-

※ 방문진료세트 등 소액장비는 제외

### 나. 전염병관리 정보체계 구축

- (1) 전염병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 '95.11부터 '99. 5월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보네트워크 구축

### 다. 취약계층의 보호

- (1) 영유아와 아동의 정기검진

구 분	'94	'95	'96	'97	'98	'99목표
○ 임신부영유아건강진단(명)	55	55	46	38	38	31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천명)	51	75	63	345	416	395
○ 영유아예방접종(천명)	3,484	4,359	4,329	4,466	4,068	3,419

(2) '97. 1월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이상자를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관리 사업 강화

라. 도시지역 보건문제 대응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건소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95.12.29일자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 국가실천계획의 상당부문이 구체적 추진사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고 있음

##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주거환경의 개선과 대도시 교통난의 완화,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

### 2. 주요 추진실적

#### 가. 적정 주거의 공급

- (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택지의 계획적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정책 추진
- (2)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3) 1990년 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주택부족문제를 완화

< 표 : 주택공급실적 >

구 분	'80	'90	'96
가구(천가구)	7,470	10,168	11,135
주택(천호)	5,319	7,357	10,113
주택보급율(%)	71.2	72.4	89.2
년간건설호수(천호)	-	750	592
GNP대비투자율(%)	-	8.2	6.7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 나. 주택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1) 주택건설종합계획을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고 관련법을 개정

- (2) 주택의 규모, 주거설비, 주거 환경 등 삶의 질과 주거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책지표화하여 정책목표 설정

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추진

- (1) 전 국토면적의 11.8%에 전국인구의 45.2%, 전국 총사업체수의 58%, 전국 대학의 43%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막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수립

라.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과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

-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 작업과 건교부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 환경부의 「생태도시조성기본계획」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 추진
- (2)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한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을 갖춘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

마. 지하철 확충, 버스전용차선제 도입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율 제고

< 표 : 지하철 확충실적 >

구 분	1993	1997
지하철 연장(전철 포함)	280.2km	621.7km
수송분담율		
서울	25.7%	40~50%
부산	7.7%	21%
대구	-	18%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

바. 환경친화적인 국토건설사업의 추진

- (1) 제3차 국토개발계획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기반시설을 확충
- (2) 건설활동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환경관리지침 개발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없 음”

4. 평 가

- 가. 매년 개최되는 UNCSD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주요 계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음
- 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환경개선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차원의 인간정주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의 확보, 국제적인 연대 등에서 구체적인 실행수단이나 프로그램이 미흡

##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정책의 기획단계 및 집행과정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 2. 추진실적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립운영('97. 9)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17개분야 62개사업에서 17개분야 63개사업으로 확대

· 신항만건설, 고속철도 건설, 석유비축시설 추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 저수지 또는 우수지 삭제

- (3) 평가대행자의 관리감독 강화

(가) 사업자와 계열회사관계인 평가대행자의 평가서작성 대행 금지

(나) 평가대행실적, 행정처분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고하고,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가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저감대책 강구

#### 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체계의 개선

- (1)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운영을 통해 환경보전 및 개선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운영

(가) 사업승인 개별법령(국토이용계획 변경, 산업단지의 지정 등)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나)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총리훈령 제299호)에 의거 행정기관의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실시

(3)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실시에 따른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의제정에관한지침” 통보(‘97.12)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분야 및 원인

(1)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재해, 교통, 인구 등 각종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평가가 곤란하고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유발

(2)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단위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정책수립단계에서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나. 대책

(1)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통합일원화

(2)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 단계에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제도 도입

## 4. 평 가

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82년 도입된 이래 개발우선의 정책하에서도 나름대로 국토환경의 보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평가서의 부실작성, 평가서 검토기능의 미흡, 협의내용 미이행 등으로 일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을 감안하여 '97년 하반기 이후 평가서 전문검토기관 설립, 협의내용 이행의무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제9장 대기보전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보전정책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질 확보

### 2. 추진 실적

#### 가. 대기환경보전 기반 강화

- (1)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영하고, 대도시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배출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97년에는 수도권 17개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
- (2) 사업장의 자율적 오염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제도의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3) 오존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예보제 시행('98.2월현재 오존경보제는 13개도시에서, 오존예보제는 6개도시에서 시행중)

#### 나.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 추진
  - 96년부터 천연가스 승용자동차를 시범 운행
  - 98년부터 천연가스버스 시범운행중(버스4대, 충전소 2개소)
- (2) 휘발유, 경유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을 강화('98.2)
  - 승용차 0.62 → 0.4g/km, 중량자동차 : 11 → 6g/kwh
- (3) 경유차 공해저감장치의 보급방안을 강구

#### 다.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강화

- (1)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추가지정
  - 97년 16개에서 98년 25개 물질로
- (2) 사업장 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배출시설에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의 설치 의무화
- (3) 산업체, 발전시설 및 난방시설용 저공해 연료의 공급 확대
  - '98년말 현재 저황중유는 62개도시에, LNG등 청정연료는 29개도시에 공급
- (4) 오존 및 악취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배출하는 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분야 및 원인

- (1) 산업체와 난방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오존경보 발령횟수(서울 : '95년 2회→'97년 16회)가 늘어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은 계속 증가
- (2) '85년 100만대이던 자동차대수가 '97년에 1000만대를 돌파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오염물질배출량도 700만톤에서 1700만톤으로 증가

#### 나. 대책

- (1) 대도시 대기오염 심화의 주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2002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책 지속추진
- (2)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천연가스자동차의 개발을 적극지원하여 저공해자동차 생산 촉진

### 4. 평 가

가. 동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수질, 폐기물 등 다른분야에 비해 개선속도가 특히 빠른 것으로 평가됨

# 제10장 토지자원의 관리 및 계획에 관한 통합적 접근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 및 토지자원 이용의 지속성 확보

## 2. 추진실적

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 1982년, 1993년 전면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 국토이용계획 수립

- (1)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
- (2)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이용

< 표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선 >

구 분	1992	1996
국토면적(km <sup>2</sup> )	99,300	99,698
용도지역지정	<p><b>10개지구, 7개지구</b></p> <p>① 도시지역,                    ② 공업지역                      ③ 취락지역,                ④ 관광휴양지역                      ⑤ 개발촉진지역,        ⑥ 경지지역                      ⑦ 산림보전지역,        ⑧ 자연환경보전지역                      ⑨ 수산자원보전지역, ⑩ 유보지역</p>	<p><b>5개지역, 5개지구</b></p> <p>① 도시지역                      ② 준도시지역                      ③ 준농림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p>

나. 자연 및 환경보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1)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 전 국토면적의 60.1%을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 자연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지구, 구획 등을 지정관리
  - (가) 전국토면적의 4.8%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 합리적 이용 도모
  - (나)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관리(1997년 5월 현재 383개소 1,164km<sup>2</sup>)
  - (다) 인구증가, 산업발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91.25km<sup>2</sup>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보전

< 표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선 >

구 분	1992	1996
자연공원	67개소, 7,442km <sup>2</sup>	67개소, 7,442km <sup>2</sup>
상수원보호구역	369개소, 1,149km <sup>2</sup>	383개소, 1,164km <sup>2</sup>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개소, 55.46km <sup>2</sup>	8개소, 99.78km <sup>2</sup>

다. 토지 종합정보망의 구축

- (1)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공시지가 전산자료,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계약서 전산입력 자료를 통합한 토지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 ('95. 2)
- (2) 토지종합전산망을 활용하여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상시관리하여 부동산관리 및 토지정책에 필요한 자료 제공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분야	원인	보완대책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	· 토지이용계획 체계 개편이 근본적 개혁이 아닌 지엽적인 개선에 그쳐 실효성 부족 · 엄격한 계획제도가 수립되지 않은채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준농림지역등에 난개발을 초래 ·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복잡한 토지이용규제체계로 인해 토지수급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 지속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 용지공급의 확대
· 농지 및 산림지의 지속적인 감소	· 공업화가 촉진되고 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주거 및 공업용지의 수요와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경지, 산림지의 타용도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농경지는 1992년에 비해 1,244km <sup>2</sup> , 산림지는 159 km <sup>2</sup> 감소	· 환경친화적 농경지 및 산림지 이용방안 모색
· 환경보전지역 지정과 규제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팽배	· 규제중심의 지역지정에 따라 각종 토지이용 및 행위에 제약을 받는 지역 및 주민의 반발이 심해짐	·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참여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역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 토지종합정보망의 비효율적 운영	· 토지종합정보망은 내무부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연계시킨 것이나 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 토지센서스 실시 · 부처협력방안 모색

### 4. 평가

가.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통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용토지의 부족, 규제 중심의 토지정책, 부동산 투기의 만연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토지사정으로 인해 실행수단이나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 제11장 산림황폐방지

[소관부처: 산림청]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제 구축과 산림생태계 관리강화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제고

### 2. 추진실적

#### 가. 산지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확립기반 조성

- (1) 전국 산림 650만ha를 3개 이용목적별로 관리
  - (가) 생산임지(355만ha) : 목재생산 기지화
  - (나) 공익임지(143만ha) : 환경보전기능 증진
  - (다) 준보전임지(147만ha) : 토지공급, 다목적 이용

#### 나.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환경기능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1) 조수보호를 위한 수렴면허시험제 도입 : '98. 2월
- (2) 산림식물자원 보호를 위한 자생식물및천연보호림관리요령 제정 : '98. 6
- (3) 지역단위의 산림식물자원 현지의 보전기관 확대 : 지방수목원 3개소

#### 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산림협의회(몬트리올프로세스) 회의개최 : '97. 7월 서울
- (2) 세계산림대회,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관련 회의 참석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분야 및 원인

- (1) 독립가, 임업후계자 육성과 협업경영체 조직등 사유림경영 활성화 부진
- (2) 도시지역 산림은 크게 증가되었으나 국토녹화와 산지자원화 우선정책 추진으로 도시림 조성관리 미흡

#### 나. 대책

- (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선발·육성하고 정부지원과 사업실행 자율권 확대
- (2) 도시공단등 도시생활권 지역의 「나무와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 4. 평 가

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산림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으나, 산림경영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정비가 필요

나. 생물자원의 보호 및 자원화를 위하여 산림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식물의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천연보호림 등 현지내 보전시설을 확대하고 임업연구원, 수목원 등 현지의 보전기관의 관리기능 강화 필요

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연계하여 공동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산림경영자 및 임업기능인 육성을 위해 임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이 필요

##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소관부처: 산림청]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황폐지 복구와 예방, 생태계 보전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2. 추진실적

가. GIS 기법을 이용한 북한 산림실태 파악 및 황폐현황 조사(임업연구원)

- (1) 산림면적 : 844만ha로 국토의 68% 차지
- (2) 임목축적 : 3억4천만 $m^3$ 으로 ha당 평균 41 $m^3$ (남한 53 $m^3$ )
- (3) 황 폐 지 : 132만ha 추정(전체산림의 15%)

나. 산성우 모니터링 사업 지속실시(전국 65개 고정조사구, '97년말)

- (1) pH 4.5이하 : 해당지역 없음
- (2) pH 4.6~5.5 : 울산, 여천, 광양, 예천, 거제 등 46개소
- (3) pH 5.6 이상 : 문경, 보성, 김천, 보령, 강진 등 19개소

다. 환경오염피해 임지 회복사업 실시('98. 4.28, 전남 여수)

- (1) 6ha 피해임지에 석회, 고토, 복합비료 살포
- (2) 산성화된 산림토양의 중화와 쇠퇴된 수목의 생장 촉진

라. 국토보전수원함양경관조성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 (1) 산지예방사업 등 130ha, 사방댐 70개소 설치

마.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 (1) 제1차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참석('97.9.27~10.12, 이태리 로마 FAO)
- (2) 중국(사막지역 : 국토의 27%), 몽골(국토의 40%)과 임업협력 강화
  - (가) 한중 공동웁샵 개최('98.10)
  - (나) 한몽골 임업협력약정 체결('98.10)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및 대책

- 가. 광역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성우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나,
- 나. 현재 미흡함으로 전국 단위 고정조사구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산성우 모니터링 실시

### 4. 평 가

- 가. 1960년대부터 황폐산지의 복구등 치산녹화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산림황폐로 인한 토양악화는 해결되었으나, 산성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피해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나. 동북아 산림포럼 발족을 통한 중국등 인접국가와의 협력 증진과 사막화방지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제 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소관부처: 산림청]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산림생태계의 균형유지, 토양침식 방지 및 용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수역 관리 강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

### 2. 추진실적

- 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서해안, 한강하구 및 임진강 하류지역) 산림생태계 조사 실시 : '98. 5월
- 나. 대기오염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에 의하여 산성화된 토양의 회복사업 실시 ('98. 4월, 전남 여천 영취산 6ha)
- 다.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이 있는 5대강유역 집중관리대상 산림 선정 : 1,160ha
- 라.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 : '97까지 9개소
  - (1) 전국 산촌 실태조사 실시로 산촌지역 구분과 개발대상 산촌(498개 읍·면) 지정
  - (2) 산촌 유형별 개발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산촌종합개발 추진체계 확립 - 산림소득형, 휴양림연계형, 농림업복합형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분야별 원인

- (1) 우리나라는 산지 경사가 심하여 토양침식과 산사태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음
- (2)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산촌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열악

#### 나. 대책

- (1) 자연재해의 피해를 경감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2) 산촌지역의 자원특성을 활용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광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소득증대방안 모색

#### 4. 평가

- 가. '94년부터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해 오고 있으나,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필요
- 나. 전국 주요 강유역의 산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맑은 물 공급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으나, 산림사업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망

## 제 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소관부처: 농림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환경친화적 방법에 의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업생산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농외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 2. 추진실적

가.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과 석회를 사용하여 식량증산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경지 환경보호 도모

(1) '98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가) 규산 : 316천톤, 158천ha개량, 17,393백만원 지원

(나) 석회 : 270천톤, 135천ha개량, 12,960백만원 지원

※ 공급대상지:유효 규산함량 130ppm 미만의 논, 산도(pH) 6.5 미만의 밭

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환경농업 기반 구축

(1) '98 사업추진 : 5개소, 100억원 투자(개소당 20억원 지원)

-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개량 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및 기술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추진

(1) 농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개정('98. 2)

(2) 지역 추진협의회 운영방법 개선 및 안전성조사 시료의 신뢰성 확보등

라. 부적합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반영

마. 환경보전농업에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방안 검토

(1) 친환경농업 경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위해 직불제를 '99부터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가) 유기농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기본방침 결정('98. 5.22)

(나)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98. 6월중 2회)

(다) 직불제 시행규정등 관련법령 정비계획 수립('98.6)

※'99년에는 직불비용으로 57억원을 지급예정

바.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 설정

(1) 안전사용기준 설정 : ('97) 490품목 → ('98. 9) 530품목

(2) 농약 안전사용 교육실시 : ('97) 776천명 → ('98) 834천명

사. 농업환경정보 전산화 연구

(1) 농업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농업환경변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 농업환경정보 은행·고속정보망 및 농업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아. 환경농업 현장실증 연구실시

(1) 유기농법 현장시험, 토양유실방지 현장시험 및 지렁이를 이용한 소규모 축분처리 실증시험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분야 및 원인 :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여건 및 제도 미흡

- (1) 퇴비화, 액비화등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미흡

나. 대책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에 자원화촉진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2)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따른 환경보호기여도등 공익효과를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

### 4. 평 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제 15장 생물다양성보전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국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확보

### 2. 추진 실적

#### 가.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 수립

##### (1)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안) 작성('98)

- (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부처적 장기정책비전을 수립

※ '99년에는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5개년 실천계획) 수립예정

#### 나.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사업 추진

##### (1)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실시('97~2001(5개년간))

- 사업내용 : 전국의 산, 하천 및 해안선(육지 206개 권역, 해안선 145개 지소)에 대한 지형, 경관, 식생, 야생동·식물 현황 및 분포 파악

##### (2) 연구 용역사업 추진

- (가) 황소개구리의 생태특성 및 포획등에 관한 연구('98. 4~'99.1, 18백만원)
- (나)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98. 9~'98.12, 18백만원)
- (다) 자연환경종합 GIS구축('98. 7~'99.7, 230백만원)
- (라) 생태도시조성기반기술개발사업Ⅱ('97.10~'98.9)
- (리) 국내 자생식물 보전 및 자산화방안('97.12~'98.12, 30백만원)

다.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계획 추진

- (1) 자연친화형 녹지공간조성기술 개발·보급  
- 「전국 그린네트워크 사례집」 발간·배포('98.1)
-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자연경관보전관련조례(안)」을 지자체에 시달('98.7)
- (3) 단절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사업 시범추진
  - (가) 지리산 시암재 지하 이동통로 설치 완료('98.10)
  - (나) 태백산 구룡령 지상 이동통로 설치 추진('98.9 착공)

라. 현지내 보전능력 강화

- (1) 전국 60개 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실시
- (2) 호랑이, 저어새등 동물 136종, 나도풍란, 한계령풀등 식물 58종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98.2)
- (3) 도서지역 생태계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 (가) 무인도서의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98.6~7월)
  - (나) 「도서생태계보전기본계획」 수립('98.1) 및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조사 실시
- (4) 보호지역 추가지정
  - (가) 생태계보전지역 : 울산 정족산 무제치늪(면적 0.184km<sup>2</sup>)
  - (나) 랍사협약에 의한 랍사습지 추가등록 : 경남 창녕 우포늪('98.3)
  - (다) 우포늪 보전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6만평) 및 감시원(4명) 배치

마. 현지의 보전능력 강화

- (1) 강원도 자연생태 연구공원 조성(500백만원) 및 목포자생식물원 건립(238백만원)에 대한 국고지원

-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보전·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98. 9~'99. 4, 20백만원)

바.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체계 구축

- (1) 자연환경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기 위한 GIS-DB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98.7~'99.6, 2.3억원, 한국항공)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현재의 재정여건 및 정책틀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음

### 4. 평 가

가. 분야별 실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나. 다만, 현재 생태계보전지역의 단위별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부교란에 자체적인 완충능력을 갖는 정도로 지정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내 보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보도 필요한 분야임

## 제 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소관부처: 과학기술부]

### 1.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 인간보건증진, 식량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 2. 추진실적

#### 가.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

- (1)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통한 고능력 농림축산물 생산체제의 구축 및 식품제조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농림부를 비롯하여 과기부, 산자부등 연구개발 추진
- (2) 난치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신바이오 의약품의료기장비 개발 및 의료정보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산자부를 중심으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명공학 연구사업 추진
- (3) 생물학적 공해처리기술, 환경 안전성 평가기술, 생물청정(Bio-clean)기술 개발로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 및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국가 목표로 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

#### 나. 생명공학 안전성 증대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 (1) 과기부, 환경부, 산자부 등 주요 관련부처별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택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2) 생명공학육성법상의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가) 생명공학안전 및 윤리에 관한 지침 작성
  - (나) 인간복제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원 금지

(다) 생명공학안전윤리문제를 검토할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 생명공학안전성 평가센터 등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안전적용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 추진

구 분	사 업 명	실 적
연구지원사업	생물다양성 지원사업	· 생물다양성조사, 자원편람 출간, 생물종관련 정책연구 및 국제회의 지원 등
연구기반시설 조성	대덕단지내 첨단의료원 설립 및 의과학센터 육성	· KAIST 의과학센터 설립추진 ('97-'98년간 건설비 55억원 투입)
생명공학안전성 확보	안전성시험·연구시설 확충	· 화학연구소의 안전성연구센터 육성('97-'98년간 건설비 등 총 51억원 투입)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해당 없음

### 4. 평 가

관련분야별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과 관련된 분야는 현재 추진중인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을 통하여 관련규정 정비 예정

## 제 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1.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 연안·해양정책을 통합하여 해양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육상 및 해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2. 추진실적

#### 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연안역의 통합관리

##### (1) 연안관리법 제정 추진

- 연안관리법(안) 마련 '98. 3 → 연안관리법(안) 국회제출('98.11)

##### (2)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추진

(가) 전국 연안에 대한 실태조사 : '96. 2 - '98. 8

(나)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실시 : '98. 9 - '99. 9(1년간)

#### 나. 해양환경보호

##### (1)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수립·추진( '96~2000년)

(가) 총 투자예산 : 43,390억원

(나) 주요사업 : 7대 주요정책과제 추진(42개 단위사업)

-적조방지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확충, 해양오염사고예방·방제기능강화, 해양환경보전기능 강화, 해양환경보전관련 국제협력, 해양생태계보전등

(2) 7대 정책분야별 투자실적 현황

(단위 : 억원)

분야별 (7대 주요정책)	당초계획(A)	투자실적(B)			추진율	계획
	'96~2000	소계	'96	'97	(B/A)%	'98
계	43,390	14,450	6,616	7,834	33.3	7,483
적조방지종합대책	1,721	415	167	248	24.1	251
환경기초시설확충	40,716	13,440	6,180	7,260	33.0	6,919
해양오염사고예방기능	742	408	145	263	54.9	103
해양오염사고역량제고	-	78	75	3	-	149
해양환경보전기능 강화	54	46	25	21	85.2	27
해양환경보전국제협력	-	5	1	4	-	1
해양생태계보전대책	157	58	23	35	36.9	33

다.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1) 공해자원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제기여도 제고

(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결의사항 이행 및 국제공동자원조사 참여

(나) '98년 현재 11개 국제수산기구에 참여

가입기구명	가입일	가입기구명	가입일
FAO 수산위원회(COFI)	'69.1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원회 (CCAMLR)	'85.11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50. 1	국제포경위원회(IWC)	'78.12
인도양 수산위원회(IOFC)	'67.12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93.12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WACAFIC)	'74. 1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96. 3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68. 1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전협약 (CBSPC)	'95.1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70. 8		

라. 국가 관할권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 (1) 연안어장 정비 : '97년 23,000ha 완료 → 12,834ha 추진
- (2) 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 추진(입법예고·공청회 개최 : '98. 9~11) 및 환경어업기본계획 수립('98. 9) 등 환경친화적 어업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마.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불확실성 극복

- (1)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전지구적 프로그램에 참여
  - 쿠루시오 연변에서 상류해류의 계절변동연구 수행('97.10~'98.10)
- (2) 황해 및 동해환경에 관한 인접국가(중·일·러)와의 공동조사·연구
  - (가) 황해해수순환과 물질플럭스 연구('97.10~'98.10)
  - (나) 한·중 과학공동위 개최('98. 4, 중국 해남), 황해환경 심포지움 개최('98년 하반기, '99년 상반기중) 등 한·중 과학 및 기술협력 증대

바.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 강화

- (1) 국제기구 주관 회의 및 공동연구사업에 적극 참여
- (2) 국제해사기구(IMO) 제40차('97.9, 런던), 제41차('98.3, 런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참가
- (3) APEC 해양자원보전(MRC) 실무그룹회의 참가('98.6, 칠레)
  - (가) 우리측 공동연구사업 제안·승인
  - (나) APEC 해양환경 훈련·교육 센터설립 제안·유치 추진
- (4) 지역국가간 및 양국간 협력강화
  - (가) UNEP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회의 참가
  - (나) 한·중 황해환경공동조사 실시(제1차:'97.9, 제2차:'98.10)
  - (다)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개최('98.7, 서울)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문제점 : 국가실천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정부의 긴축예산 운영으로 관련사업(연안환경기초시설)의 예산확보가 다소 미흡

나. 대 책 :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육·해상오염 관리정책의 연계성 확보필요

### 4. 평 가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제 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 생태계의 수문학적·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 및 물이 필요한 분야에 양질의 물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공급

### 2. 추진실적

#### 가. 수자원 장기종합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1)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1996년 8월 정부합동으로 2011년까지(수질부문은 2005년까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모든 상수원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세부계획을 마련·추진

#### 나. 지하수의 조사·개발 및 관리

##### (1) 지하수 관리망 구축·운영

(가) 지하수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 오염특성별로 13개 지역으로 분류, 총 780개 지점을 선정, 수질 측정

(나) 주거지역등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462개 지점에 대해 시·도에서 년2회 수질 측정

#### 다. 담수자원의 질적 회복 조치

##### (1) 배출허용기준 강화

- '98. 2월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개정고시를 통하여 일부 상수원유역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2000년부터 적용)

< 표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98. 2) 결과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분	대 상 면 적 (km <sup>2</sup> )		
	현 행	조 정	증 △ 감
청 정	42,129	43,393	1,264
가	41,810	41,043	△767
나	15,323	14,826	△497
계	99,262	99,262	-

(2) 기본부과금제도 도입

- (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제도로는 매년 증가하는 산업폐수 오염부하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 (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기준인 방류수수질기준까지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기본부과금제도를 '97년부터 시행함

라. 물 절약 대책의 정책적 추진

(1) 절수형 수도기기 보급 확대

- (가) '98. 3. 1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량이 조절되는 대변기 설치 의무화
- (나) 2000.1.1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토수량을 기준으로 한 절수형 대변기, 소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설치 의무화

(2) 수도요금의 누진율 확대 및 경제적 유인을 통한 물절약 유도

- (가) 지방상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사용량 기준에서 계량기의 크기 기준으로 요금 산정방식을 대체,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까지 현실화 추진

(3) 수돗물 10% 아껴쓰기 운동 전개

- '98년도 1년동안 1억 2천만톤 절약(1인/일 : 8ℓ 절수)

\* 경제적 가치 : 520억원 (1일 : 1억 4천만원 생산비용 절감)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해당 없음

### 4. 평 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 제 19장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인간과 환경에 안전한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출입, 가공, 수송, 이용 및 처리

### 2. 추진실적

#### 가.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평가 확대 및 강화

- (1) 유해성심사항목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여 유해성심사제도 보완
  -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외에 만성독성, 발암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환경생태독성을 추가
- (2) 36,000여 기존화학물질중 안전성시험자료가 부족한 물질을 대상으로 환경독성, 유전독성 등의 시험을 실시
  - (가) 대상물질 : 33종(82개 항목)
  - (나) 시험기관 : 한국화학연구소, LG화학기술연구원
  - (다) 시험실적 : '88년부터 '97년까지 총 344종을 시험하여 41종을 유독물로 지정·관리

####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일치

-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개정으로 유독물표시방법을 유해성 등에 따라 세분화(기존 2종의 표시방법을 10종으로 세분화)

다.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 (1) 화학물질관련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 환경연구원내에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중
- (2)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데이터베이스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취급·관리 및 평가등 정보제공

라. 위해성감소계획 수립

- (1)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TRI) 도입
- (2) 석유화학·정제업종에 대한 배출량산출기법 개발 및 제도정비  
- SK(주)등 7개업체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및 추진계획 고시
- (3) 유독물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실시로 안전관리 유도 및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 (가) '98 상반기중 3,873개소를 점검하여 20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 (나) 유독물관리자 883명에 대해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교육실시

마.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능력 및 시설 강화

- (1) 우수시험기관(GLP)을 지정, 유해성시험 연구능력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 한국화학연구소, LG화학기술연구원을 GLP 기관으로 선정
- (2)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제정·고시  
- 총 483종의 유독물중 95종에 대하여 우선 제정하고, 나머지 물질은 연차적으로 제정 추진

바. 유해·위험제품의 불법 국제거래 방지

- (1) 사전통보승인협약(PIC)이 발효(2000년 예상)되면 이에 적극 참여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가. 분야 및 원인

(1) 화학물질관리는 장기간 대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초과학의 발전없이  
는 곤란한 분야로써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

-국내 시험기관의 능력 및 시설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

나. 대 책 : 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확보하고 추진계획의 진척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철저를 통하여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를 추진

### 4. 평 가

가. 화학물질관리의 제도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나,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기간이 필요

-안전성평가 확대, 위해성감소계획 수립등은 대체재의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새로이 도입한 제도의 정착에도 상당한 기일이 필요

나. 제도의 정착화와 함께 기초과학기술의 발전방안의 제시가 필요

-화학물질은 산업발전의 기초가 될 뿐만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기초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긴요함

##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방지와 환경안전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청정생산기술 이용으로 폐기물발생을 저감시키고, 유해폐기물의 관리·처리시설을 확충

### 2. 추진실적

가. 발생량 저감을 위한 청정기술개발 및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 (1)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폐기물자원화기술 등을 포함시켜 유해폐기물 발생량감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사업 추진
  - (가) 폐기물중 유가금속 회수 기술개발('95~'98, 한국과학기술원)
  - (나) 유해폐기물 고형화기술('95~'98, 한국기계연구원) 등
- (2) 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으로 민간업체 용자 지원
- (3) 폐기물예치금제 및 폐기물부담금제 시행중

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 (1) 군산 및 광양 2개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 (가)군산 : 소각시설(60톤/일)설치 공사중('95.12~'98.7. 공사 완료)
  - (나)광양 : 1단계 매립장('96.1. 완공, 20천m<sup>3</sup>) 설치후 종합 시운전 완료('97.12)
- (2) 창원처리장 및 온산증설공사 추진
  - (가)창원 : 창원국가공단내 182천m<sup>2</sup>부지에 1단계 매립장(24,000m<sup>3</sup>, 62,000m<sup>3</sup>) 설치공사중('98.12월 완공예정)
  - (나)온산4차 증설 : 4차매립장(5,800m<sup>3</sup>, 106,300m<sup>3</sup>) 설치('97.11~'98. 7)

다. 폐기물처리경로의 투명성 제고

- (1) 최초 배출개시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계획서와 폐기물 분석결과서, 처리자의 수탁확인서로 적법성 확인등 처리경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중('98. 8~)

라. 바젤협약의 국내이행과 국제협력 증진

- (1) 관련법령 정비
  - (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개정('97. 8.28)
  - (나) 동법시행령 개정('97.12.31)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개정·고시('98. 7.15)
- (2) 관련 국제회의 참가(바젤협약 제3차 이행특별회의, 기술실무회의등)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4. 평 가

- 가.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으로 줄이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유해폐기물의 발생지 처리확대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민간처리시설 설치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 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방지하고자 관계법령을 정비·보완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제21장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각종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생활쓰레기 재활용, 특히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증대시키며 위생적인 소각처리 및 매립시설을 확충하여 쓰레기의 환경적 안전관리 도모

### 2. 추진 실적

#### 가. 폐기물의 감량 촉진

- (1) 생활쓰레기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저감대책을 지속추진
- (2) 가정 및 소규모사업장외에 모든 일반폐기물배출원에 종량제를 적용하고, 종량제 비닐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저감방안 지속강구
- (3) '97년부터 시행된 사업장폐기물 자율감량제도를 조기정착하고,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감량제도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4)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81만개소)의 의무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과태료부과등 조치추진

#### 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 (1)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 (가) 권역별로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98년 타당성조사)하여 재활용업체 유치
- (나) 재활용 산업체에 대한 재정(450억 → 480억)등 지원 확대

(2)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를 확대(대상기관 : 114 → 180개기관, 대상품목 : 13 → 80개품목)하고,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도 우선구매 적극 권장

(3) 재활용 폐기물의 적체해소 대책추진

(가) 조달청 비축자금확대(225억 → 400억원), 비축기지조성(3개소) 등을 통해 재활용품 수급조정기능 강화

(나)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병의 대량 소비방안 강구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운영효율화

(1) 매립·소각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가) '98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63개소(매립 22, 소각 27, 종합 14)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개소 설치 추진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시설의 원활한 입지·운영 도모

(2)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신뢰 제고

(가) 폐기물 소각시설별로 다이옥신규제기준을 조기 달성하고, 플라즈마 용융소각기술의 도입을 적극검토

(나) '98년중 사용중인 500여개 매립시설을 일제점검한 후 시설을 개선하고, 5개소의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를 정비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분야 : 폐기물의 분리수거 기능 및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촉진

나. 문제점

(1) '95년 쓰레기 종량제 이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은 꾸준히 증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8톤트럭 1,880대분이고, 1년에는 68만여 트럭이나 됨

(2) 좁은 국토현실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매립에 의존

다. 대책

(1) 폐자원의 집중 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및 재활용폐기물의 분리수거 시설·장비 조기 확충 등

(2) 음식물쓰레기의 전담 수거체계 구축, 음식물쓰레기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음식물쓰레기 공공사료화시설 확충 및 효율화

#### 4. 평 가

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기물 재활용 등 폐기물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중 이나, 대책범위가 광범위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나. 몇개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전부처가 참여하고, 국민들의 자원 및 에너지절약 정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다. 특히, 자원 낭비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책의 적극추진 필요

##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적정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하고,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적정 처분할 수 있는 규모의 처분시설 확보

### 2. 추진 실적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체제 조정('97.1) 및 관계법령 개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	- 한국전력공사
적용법령	- 원자력법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방축법)	- 전기사업법, 원자력법 - 전원개발특례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주지법)

※ 방축법 폐지 : 발주지법 개정에 따라 '97.1.13 폐지

나.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

(1)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98. 9.30)

(2) 주요내용

(가)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시설 : 2008년 준공·운영

(나) 사용후연료관리 :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 보관, 2016년 이후는 소외 저장시설에 중간저장

#### 다. 관련 연구·기술개발

- (1) 방사성폐기물 관련, 처분시설 설계기술, 감용기술 개발, 처분 적합성 연구
- (2)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연소도 효과를 적용한 저장·수송관련 기술개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분야 및 문제점 : '97. 1월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이후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확정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미흡

나. 대책 : '98. 9.30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이 의결되었으므로 동 대책에 의거 사업자인 한전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99년부터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

### 4. 평 가

가.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이후 새로운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확정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음

나. 확정된 대책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확보하여 종합관리시설 건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소관부처: 여성특별위원회]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각종 위원회등에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지원체제 구축

### 2. 추진실적

#### 가. 정치·행정 등 공공분야에 여성진출 확대

##### (1) 정치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분야의 여성진출확대는 지극히 저조한 상태

(나) UN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권한지수에서 한국은 102개국중 83위이며, 또한 IPU보고에 의하면 '98년 6월 현재 한국 여성의원비율은 163개국중 129위로 나타남

- 15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3.68%(11명)
- '98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2.3%(97명)

(다) 여성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99년도에는 여성정치후보자, 청소년,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할 계획

(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가) 유엔의 권고기준인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30% 달성시기를 당초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조정하고 각종위원회 규정에 여성위원 구성비율 명시 촉구

(3) 행정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가) '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6년 10%→2000년 20%) 도입 및 '98년 8월 여성채용목표율 20% 달성시기를 1999년으로 조정하고 적용대상자를 9급 채용시험까지 확대

(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따라, '95년 18.1%에 불과하던 여성공무원 비율이 '97.12월 기준으로 28.7%까지 증가

나. 여성발전의 기반구축

(1) 1995년에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 - 2002년간)을 수립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방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환경과 여성보건

(1) 1996년 여성사회지표체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여성보건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동지표에서 환경안전에 대한 여성의 의식을 새로운 항목으로 포함

라. 평화문화정착·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1)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제1항에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책무 부과 및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 (2)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1997년 장애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하는 방향으로 개정
- (3) 1997년 12월 가정폭력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가정폭력을 방지하여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수립('98.11. 2)

마. 여성의 환경활동 지원체제

- (1) 일반여성용과 여성환경전문가용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분야 활동자 대상 시범교육 실시(한국여성개발원, 1997년)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추진미흡 분야

- (1) 전반적인 여성발전에 비해, '환경과 개발 분야에서의 여성(Women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관심 미진
- (2) 환경오염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 부족

나. 대책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수립, 집행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여타 부문에서의 여성참여와 같은 수준으로 제고
- (2) 환경오염이 여성의 재생산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여성의 재생산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 4. 평 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사회관습과 시민의식 증진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공적부문에서 여성의 주도적 역할 활성화 필요

##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환경보호와 경제·사회적 개발에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

### 2. 추진실적

가.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활동과 환경생활과의 기회보장 및 참여확대

- (1) “21세기 청소년상” 6개영역(문화적 감성을 지닌,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를 가진, 봉사와 협력정신을 가진,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가진,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하는, 국제감각을 지닌 청소년)을 정립('97.11월)
- (2) 청소년이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수립·시행(1998~2002)
- (3)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청소년정책과 활동지표로 활용키 위해 '90년 제정 청소년헌장을 개정·선포('98.10.25)

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환경관련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 (1)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지원과 문예경연대회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매결연 및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격려 등 추진

- (2) 농어촌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94년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학사업과 농어촌 청소년 선진영농연수, 해외 유학생 선발지원등 추진
- (3) 경기도를 비롯한 9개도에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
- (4)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자연체험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 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환경보전 정보교환 통로 개설

- (1) 청소년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 '97년 현재 서울 등 15개 시·도에 설치, 운영중
- (2) 정보통신부에서 운영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청소년수련활동서비스”에 환경정보코너를 개설 운영('96.12월 DB 구축완료)

#### 라. 청소년의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 (1) 세계청소년 장관회의 참석('98. 8, 리스본), 대표연설을 통해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설명
- (2) '97년말 현재 9개국과 청소년 교류협정을 체결
  - 체결현황 :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정상추진중이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 예상

### 4. 평 가

-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만 보고 현재의 권리와 책임을 유보시켜왔던데서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인식을 전환
- 이에따른 정책의 수립으로 청소년에게 잃어버린 권리와 현실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킴
- 눈앞에 닥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필요로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지원

##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차원에서 원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여

### 2. 추진실적

가. 관련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지역적 논의동향 파악

나.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원주민 생활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개도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국제적 논의자체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의 참여 저조

### 4. 평 가

원주민의 생존보장차원에서 원주민 생활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 지속 필요

##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환경정책수립, 시행에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을 실천

### 2. 추진실적

#### 가. 환경정책수립·시행에 민간단체의 참여확대

##### (1)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운영

(가) 환경분야 기본대책 및 주요정책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연구 및 발표와 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위하여 20개의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94년부터 운영

(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는 분기별 또는 현안사항 발생시 개최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 표 :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 연간 개최실적 >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3회	3회	3회	3회	4회

#### 나.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

##### (1)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행사에 대한 행정지원

(가) 민간단체의 환경관련 행사에 대한 후원, 상장발급, 표창 등 민간단체 활동 적극지원

(나) 민간단체의 환경전문지식 제고를 위해 매월 250개 단체에 대하여 환경정보지, 환경부 간행물 등 정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

(2)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를 통한 민간단체의 재정지원

(가) '94년부터 금융권 및 기업의 환경보전 기부금을 재원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는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민간단체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

< 표 :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민간단체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지원단체	11개	26개	81개	48개	105개
지원금액	73	200	544	250	500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립·시행에 민간단체의 참여확대,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지원,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수준에서 실천
- 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정책의 수립 집행
- 다. 지방의제 21의 작성·추진
- 라.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계의 정비 및 환경관리 기능 강화
- 마. 관련 집단간 협력체제의 구축,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환경관리 재원의 확보

### 2. 추진실적

#### 가. 자연친화적 개발정책 추진

- (1) 자치단체별 개발계획과 연계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추진
  - (가) 16광역시자치단체는 계획수립 완료·시행
  - (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환경종합계획수립이 초기단계(수원, 과천, 경주 등)
- (2) 버스전용차선제, 차량10부제, 혼잡통행료, 자동차전용도로 설치등 교통혼잡완화, 에너지절약, 공기오염저감대책의 발굴 추진
- (3) 자연하천형 정화사업, 도시공간 녹화, 환경농업지구 지정, 환경친화 마을육성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사업 발굴·추진
  - 자연하천형 정화사업(무주), 자연생태공원조성(의왕, 남해, 대구), 환경농업지구 지정(무주, 남해), 환경친화마을 육성(강원도 등)
- (4) 각종 개발사업등과 연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추진

(5) 자연친화적 개발정책을 위한 시민, 기업, 행정기관의 행동원칙을 보급하여 환경의식 및 실천행동 고취

\*예시) 시민 : 녹색소비생활 실천, 기업 : 환경친화적 생산체제 구축,  
행정기관 : 환경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 나. 지방의제21 수립·추진

### (1) 추진현황

(가) 그동안 「지방의제21」 작성요령 보급, 설명회 및 연찬회개최, 자치단체 공청회, 평가회 지원,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지원 등 실시

(나) '98.12월말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132개 자치단체에서 추진

(수립완료 54, 수립중 78)

### (2) 추진상 과제 및 조치계획

< 과제 >

(가) 자치단체별 전략확보, 정보, 교육 및 예산 등의 지원체제 마련 등 지방의제21 추진기반 확충

(나) 실천의 주체인 주민, 기업의 인식 및 참여 확산

(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 기업, 행정의 조정역할 정립

< 향후조치 >

(가) 환경기본조례제정, 인터넷 등을 통한 지역정보네트워크 구성, 공무원·주민·기업 등에 대한 정례교육 실시등 계획추진에 필요한 제도기반, 인력양성 지원

(나) 지방의원, 지방NGO대표, 주부단체,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동비 지원방안 강구

(다) 계획추진에 대한 평가 및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

#### 다. 환경관리기능 및 역할제고

- (1)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실태,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한 지역환경기준 설정·관리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
- (2)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등 자치단체간 환경행정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 추진(수도권행정협의회,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등)
- (3)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13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환경기구 개편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분야 : 지금까지의 친환경적시책은 제도 및 예산체제의 뒷받침을 포함한 종합적, 입체적 접근에는 미흡하고 일부 시책은 연구수준에 머물어 정책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나. 대책 :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할 제고 및 환경시책 추진 기반 마련 노력 지원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적 평가실시

### 4. 평 가

가. '98년도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환경분야에 비중을 두도록 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환경관리기능 강화를 포함한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

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목표,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환경관리에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나, 환경투자순위조정, 환경부서의 위상 등이 다른분야보다 미약한 편으로 지방수준에서 친환경적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구체적실천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

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환경관리강화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친환경적 지방행정을 지속 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환경계획의 연계추진등 환경보전의 주체로서 역할제고에 노력강화 필요

##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소관부처: 노동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근로자와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

### 2. 추진실적

#### 가. 산업안전 및 환경에 관한 ILO협약등 국제기준 준수

- (1) '97.10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옥내작업장에 한정하여 실시 하던 직업환경측정을 유해성이 높은 옥외 직업장도 측정토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
- (2)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선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재해예방 기술기준 개발·보급('97 : 49건, '98 : 12건)
- (3)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안전인증제(S마크) 실시('97 : 40건, '98 : 15건)
- (4) 제14차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총회를 '98. 4.20~4.25 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강화

#### 나. 양자 및 3자기구의 역할 강화와 환경적 단체협약 체결의 권장

- (1) 노·사 자율에 의한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예규 제·개정

- (2)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다발사업장 자율개선지역 프로그램(KISCO-TOP 프로그램)을 개발·보급('97 : 525개소, '98 : 827개소)

#### 다. 업무상 재해·부상 및 질병예방

- (1)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별로 재해율, 근로손실일수 등의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에 대해 업종·규모에 따라 차등관리 실시
-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기술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 (3)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안전점검의 날 운영 6회, 시범점검 483개 사업장, 자율점검 39,434개 사업장)

#### 라. 작업상의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1) 실험실습 시설을 이용한 현장감 있는 단기교육으로 34개의 전문화교육과정 운영('97:4,754명, '98:2,273명) 및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정착을 위한 노조간부 교육실시('97:176명, '98:54명)
- (2)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현지출장하여 무료로 교육('98:2,637명)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인적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신교육 실시('97:2,713명, '98:1,946명)
- (3)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생활주변의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신고토록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문제점 : 중소·영세사업장 안전·보건시설 및 기술개선 중점지원사업이 경제적 여건악화등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대출 심사강화로 잔여금을 융자 받지 못하여 자체비용 부담에 따른 투자 취소사례 급증

나. 대책 : 정부차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부실채권 발생시 손실보전대책 강구등 금융기관에 혜택 부여

#### 4. 평가

가. IMF 체제 도래후 노사의 안전의식 이완, 사업주의 재해예방투자 감소등 사업장 내적으로 산업안전환경이 악화되고, 산업안전보건 담당 지방노동관서 조직이 축소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지고,

나. 국제적으로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규격」(ISO 18000) 제정 움직임이 있는 등 사업체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인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요청됨

## 제30장 산업계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모든 기업 및 산업계는 환경관리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

### 2. 추진실적

#### 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

- (1)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하여 기술개발비 지원
- (2) 산·학·연 청정생산기술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

#### 나.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 (1) 공해방지시설 등 시설장비의 구입시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지원
- (2) 청정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의 일정부분 세액공제

#### 다. 산업계의 환경경영 확산 촉진

- (1) 민간추진본부(대한상의) 중심으로 환경경영 관련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2) 품질환경인증협회의 환경경영(ISO14000) 인증과 인증업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 사항 없음

### 4. 평 가

최근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나, 최근 산업계의 환경의식 제고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노력,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확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산업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제31장 과학기술계

[소관부처: 과학기술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환경 정책 수립, 시행의 최적화 도모

### 2. 추진실적

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민간참여 및 전문가 활용 확대

- (1) 「과학기술장관회의(과학기술혁신특별법 제4조)」등 국가과학기술정책 심의·결정기구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 (1)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기본정책발전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총 11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헌법 제127조 및 자문회의법)」 구성·운영

\*'97. 7~'98. 6 기간중 총 20차례의 자문회의 개최

다. 정부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성과 확산

- (1) 정부출연(연),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

\*'97. 7~'98. 6 기간중 총 149개 과제 수행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종합평가 의견

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환경정책에 대한 참여와 지지 필요

- (1) 이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중요
- (2) 이에따라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이 필요

## 제32장 농민의 역할 강화

[소관부처: 농림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켜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유지

### 2. 추진실적

가. 농업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에 농민참여 확대

(1) '98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발간·보급('97.11. 8)

(가) 일반농업인등 사업대상자가 쉽게 사업지침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시·군, 읍·면·동에 배부(총 6권, 3,700질 배부)

(나)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선진농업인을 주도할 전문경영체 육성 및 지원이 주요 목적

나. 지속가능한 농업기술개발 및 정보전파 촉진

(1) 기초과정, 전문기술교육과정, 농협 교육원의 절약형 환경농업과정 등 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2) 흙 살리기 운동 추진

(가) 배경 : 화학비료의 과다투입 등으로 토양, 양분균형 파괴 및 소비자들의 안전하며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욕구에 부응

(나) 주요 추진내용

1) 토양 진단에 의한 시비의 과학화 추진 및 저원가·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비 개선

- 2) 흙 살리기 비료 공급기반 조성 및 지속농업을 위한 환경보전형 자재개발·공급
- (3) 농약빈병, 폐비닐, 폐농기계 및 생활용품 폐기물 등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환경보호의 날」 지정(매월 첫째주 토요일) 운영
- (4) 환경농산물 인식 확산을 위한 조성활동 전개
  - (가) 도시소비자의 환경농업 현장방문 추진 및 환경농산물 특별전시판매 행사 개최
  - (나) 도시지역 동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 소비자 조직과 현지 작목반과 자매결연

다. 전국 “늘푸른 농촌환경 가꾸기 대회” 실시

- (1) 년 2회(영농기전 5월, 추수기 이후 11월) 실시
- (2) 농촌환경보호 캠페인 및 조합단위 폐품 수집
- (3) “남은 음식물” 자원화 방안 연구 및 보급
  - (가)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퇴비화 및 사료화
  - (나)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 실천방법」 책자 배부

라. “농촌환경 파수꾼” 운영 활성화

- (1) 농업관련 직원 및 회원 등으로 환경감시, 환경보호, 환경교육 활동 실시
- (2) 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육성 및 환경농업 시범포 설치·운영
  - (가) 작목반 육성 : ('97) 1,263개 → ('98) 1,534 개
  - (나) 시범포 설치·운영 : ('97) 159개소 → ('98) 180개소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문제점 :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판매에 애로가 있으며 환경농업을 지도할 인력 및 전문가 부족

나. 대 책 : 환경 및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농업관련 전문가 양성

### 4. 평 가

전반적으로 국가실천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33장 자원 및 재정체계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가. 국내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환경비용을 내부화하여 환경투자비용의 주요 재원으로 삼음
- 나. 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 증대 및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 마련과 개도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 2. 추진실적

가.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

- (1) 휘발유 : 455원/ℓ ('98.1.9)→591원/ℓ ('98.5.3)→691원/ℓ ('98.9.17)
- (2) 경유 : 85원/ℓ ('98.1.9)→110원/ℓ ('98.5.3)→160원/ℓ ('98.9.17)

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상

- (1) 등유 : 25원/ℓ → 60원/ℓ ('98.1.9)
- (2) LPG : 18원/kg → 40원/kg('98.1.9)
- (3) LNG : 14원/kg → 40원/kg('98.1.9)

다.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발전용 경유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98.1.9)

라. “제2장 추진실적과 동일”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 제2장과 동일

### 4. 평가 : 제2장과 동일

## 제34장 기술 이전·협력과 능력배양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기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며, 개도국에 환경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등 환경기술협력 강화

### 2. 추진실적

#### 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안) (Green Contribution) 마련 : '97.11
- (2) 국가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체계화 및 효율화 도모를 위해 범국가적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중 : '98.4월부터

#### 나. 환경기술 투자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 (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G-7 project)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대기, 수질, 폐기물, 청정기술등 23개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3,965억원 투자 계획
  - (나) 2단계 3차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 '97.12
    - 90개 세부과제 기술개발에 총 397억원(정부:225억원, 민간:172억원) 투자

#### 다. 지역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환경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각급 연구·행정기관, 민간기업체등 환경연구역량을 총집결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추진

- (1)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계획 및 설립·운영규정 수립(환경부 훈령 제 404호) : '98. 5.12

라. 개발도상국을 위한 환경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 (1) 중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자 기술연수 추진계획 수립 : '98. 3
  - (가) 국내 환경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경험과 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 (나) '98년부터 년 1회 지속 추진 : KOICA 자금 지원 협의

마. 국제적, 지역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 활동강화

- (1) 우리나라에 청정생산의 개념을 확산·보급함으로써 국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5차 UNEP 청정생산회의(CP5) 개최 유치
- (2) ASEM의 아시아·유럽환경기술센터(AEETC) 설립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제1차 AEETC 설립준비회의 참석('98. 6.25~26)
- (3) 한·중 환경기술교류 및 양국 환경산업체간의 무역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93.10월부터 매년 1회씩 한·중 환경기술세미나 및 협력회의 개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환경기술정보센터 설립 지연

- (1) 개요 : 국내의 환경기술정보를 수집·분류·가공·보급함으로써 선진환경기술의 신속한 보급에 의한 국내 환경기술 발전 및 환경시장 개척을 목표로 환경기술센터 설립예정
- (2) 원인 : 환경기술정보의 DB화 방안, 환경기술정보관리전담기구의 미지정, 관련예산 미확보에 의해 센터 설립 지연
- (3) 대책
  - (가) 환경기술정보센터의 운영방향, 업무성격을 규정하여 설립계획 수립
  - (나) 관련인력, 장비를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센터지정 추진

## 나. 환경기술목록 작성

(1) 원 인 : 환경기술을 총망라한 DB화 구축방안 미수립

(2) 대 책

(가) 환경기술정보센터 설립에 의하여 환경기술목록을 총괄·분류할 수 있는 DB 구축

(나) 국내 KIST, 국립환경연구원등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환경기술자료의 종합관리방안 마련

## 4. 평 가

가.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이전의 중간거점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이전을 위해 국내기술의 목록화,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

나. 선진 우수기술의 도입 및 가공에 의해 재수출 또는 역수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인력의 확보와 능력배양 필요

다. 국내 신기술개발의 지원 및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 환경기술개발체제 구축

라. 향후 설립될 AEETC등 국제 환경기술정보기구를 통하여 국제협력 강화

##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소관부처: 과학기술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환경기술의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기술과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 2. 추진실적

#### 가. 환경기술개발

- (1) 폐광산복원기술, 불량매립지복원기술, 유류오염지역복원기술 등 5개과제 추진
- (2) G-7 환경공학기술개발 추진(환경부 총괄)

#### 나.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 추진

- (1) CFC 분해기술, CF<sub>3</sub>I 제조공정개발, 혼합냉매 개발 등 CFC 대체물질 기술개발 8개과제 수행
- (2) 한반도 관측, 해양관측, 과학실험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 추진중('99년 발사예정)

#### 다.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극대화

-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 '75~'98년간 총 18,923명(학사이상) 배출

(2) 해외 고급과학두뇌 활용제도(Brain Pool) 운영

- '94~'98년간 총 438명 선정·활용

(3) 해외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 지원

- '82~'98년간 총 3,021명 파견

라.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1) 과학기술정보 D/B 1,213천건 구축('98. 6.30 현재)

(2) KAIST 과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추진

(3) 전국 15개 주요 근간망을 56K~1M(bps)로 고속화·대용량화

마. 국제과학기술협력 강화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85~'97년간 906개 과제 수행)

(2) 해외현지 연구센터 활성화

- 영국, 독일, 러시아 등 해외 현지에 11개 공동연구센터 운영중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국내 및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과학기술의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제 36 장 교육, 홍보 및 훈련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환경분야 공공인식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계획,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훈련 강화

### 2. 추진실적

#### 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혁신

- (1)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환경교육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 (2)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제 1차에서 제6차년도('85~'96)까지는 8개교씩 48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7차년도('97~'98)에는 15개로 확대·운영
- (3)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을 위하여 연간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급과 환경관련 도서, 팸플렛, VTR 테이프등의 자료와 강사를 지원하고, 매년 우수 교사, 모범학생에 대한 포상실시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환경관련기관, 단체인사들이 참관하는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운영성과의 전국적 확산유도

#### 나. 공공인식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1) 국민의 실천을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을 물·공기·쓰레기 등 분야별 시리즈 형태의 광고물로 제작하여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공익광고 실시
- (2) 환경보전 홍보대상 공모전을 '91년부터 계속 실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리플렛, 기타 스티커등을 제작하여 환경단체, 지자체, 학교 등에 보급, 환경지식 습득과 이해 도모
- (3) 환경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전국민이 자발적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인식전환 유도

※ 환경보전, 세미나·간담회 348회 개최, 캠페인·공모전 등 337회, 교육·강의 985회 실시

#### 다. 훈련의 증진

- (1) '97년도 40개 과정에 총 7,237명을 교육시켰으며, 환경관련업체 민간기술요원 등에게는 신기술 및 실험·실습 위주로의 교육을 실시
- (2)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보전 윤리관을 조기 실현키 위해 초·중등교사 42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 하고,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녹색어머니 등 300명의 민간단체임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통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 하는 실천적 환경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언론·기업·시민운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제37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력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의제21」의 국내이행을 위한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및 개발도상국의 능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 추진실적

가. 능력구축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감독

(1)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

-의제21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의결(‘96.3.19)을 거쳐 유엔에 제출(‘96.10월)

(2)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시행

-재정경제부등 13개 이행주관 부처별로 연간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평가결과를 취합·분석하는 평가계획 수립·시행(‘98년 6월)

나. 「의제21」추진 기술·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적 기반 구축

(1) “공공소유 환경기술 이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개최(‘98. 2, 경주)

-회의결과는 제6차 유엔 지속개발위원회(CSD)회의에 보고

(2) 제5차 UNEP 청정생산 고위급회의 개최(‘98. 9, 강원도 평창)

-“청정생산 선언문” 채택 및 CSD 제7차회의기간중 서명을 위해 개방예정

다. 개발도상국의 능력형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지구환경금융(GEF) 기금 출연

(가) 개도국의 지구환경보전 사업 지원을 위해 GEF 기금 출연(약 550 만불)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개도국 환경공무원, 전문가의 교육, 훈련 실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가. 의제21의 국내이행강화를 위해 정부 주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임

나. '의제21 국내이행 강화방안'에 대한 전문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및 이행과정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의제21의 국내이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 제38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환경과 개발분야의 국제연합(UN) 및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2. 추진실적

가. UNCSO 회의 참석 및 관련회의 개최

- (1) '98. 2. 공공기술이전 전문가회의 주최
- (2) '98. 2. 제6차 CSD 실무회의 및 '98. 4. 제6차 CSD 본회의 참가

나.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 참여

- (1) '98. 3. WTO/CTE 회의참가 등

다.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1) '98. 1.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 참가
- (2) '98. 3.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제1차 정부간회의 참가
- (3) '98. 4. NOWPAP 제3차 정부간회의 참가
- (4) '98. 7. 한·일, 한·중 환경공동위 개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가. 국제환경협약등 국제기구 차원의 환경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

나.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수립,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제도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국제연합(UN)과 기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약등 국제법 개발 추진에 적극 참여

### 2. 추진실적

가. 국제환경규범 제정논의 참여

- (1) '98. 3. PIC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 '98. 6. POPs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참가
- (2) '98. 8. 생물다양성 의정서 작성 제5차 실무회의, '98. 8. IFF 제2차 회의 참가등

나. '98. 3.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4월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수립·추진의 총괄조정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정비

다. '98. 7. 한·일, 한·중 환경공동위 개최, '98. 4. NOWPAP 제3차 정부간회의 참석, NOWPAP 제2차 해양오염방지협약 포럼 주최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가. 분 야 : 사막화방지협약 미가입

나. 대 책 : 미국등 주요국의 가입동향 분석 후, 가입 추진

### 4. 평 가

가. 국제 환경규범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존 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 이행

나.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필요

##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소관부처: 환경부]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환경·자원·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의 확보 및 제공으로 환경친화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보인프라 구축

### 2. 추진실적

가. 환경계정(Environmental Accounting) 연구 추진

-산업별, 오염물질별 배출원단위를 이용, 환경계정(Environmental Accounting)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며 산업별 환경비용 추정의 바탕이 되는 물리적 환경 오염계정 작성 연구사업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추진('99년 상반기중 보고서 작성 예정)

나.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전산망 구축('96. 9~'97.10)

-환경부, 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271개 기관을 행정자치부 통신망으로 연결  
※ 1997년 10월에 구축, 시험운영중

### 3. 추진이 미흡한 분야

해당사항 없음

### 4. 평 가

종합환경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지원시스템을 위해 2005년까지의 환경정보화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각 장별 주관기관(부서)

각 장별	주관기관(부서)
제1장: 전문	-
제1부 사회경제부문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제3장: 빈곤퇴치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제4장: 소비행태의 전환	환경부(지구환경과)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건설교통부(국제협력담)
제8장: 의사결정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환경부(환경평가과)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	
제9장: 대기보전	환경부(대기정책과)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건설교통부(국제협력담)
제11장: 산림황폐 방지	산림청(국제협력과)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산림청(국제협력과)
제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산림청(국제협력과)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농림부(통상협력과)
제15장: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부(자연생태과)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환경부(수질정책과)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환경부(화학물질과)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환경부(폐기물정책과)

각 장별	주관기관(부서)
제21장: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환경부(생활폐기물과)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산업자원부(원자력산업과)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	
제23장: 전 문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여성특별위원회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문화관광부(청소년정책과)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강화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환경부(정책총괄과)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노동부(국제협력담)
제30장: 산업계	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
제31장: 과학기술계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제32장: 농민의 역할강화	농림부(통상협력과)
제4부 이행수단부문	
제33장: 자원 및 재정체계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제34장: 기술이전·협력과 능력배양	환경부(환경기술과)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제36장: 교육, 홍보 및 훈련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제37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력	환경부(지구환경과)
제38장: 지구환경보전 국제제도와 장치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환경부(지구환경과)